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나20034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나20034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합543510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피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최용성

2.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박정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수용

변론종결 2022. 5. 19.

판결선고 2022. 6.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합543510 판결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①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사이에 2019. 1.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B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5. 접수 제5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와 B 사이에 2019. 8.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E는 B에게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28. 접수 제657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기초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A”을 모두 “A”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이하 “피고 B”를 모두 “B”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C”를 모두 “C”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의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의 “3.”을 “2.”로, 제11면 제15행의 “4.”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 10행의 각 “F”을 모두 “H”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증인 B”를 “제1심 증인 B”로 고쳐 쓴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

별지